<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경시행일 : 2020.05.12
3. 주요 정정사항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비교지수, 펀드명칭, 운용역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신탁계약서]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펀드명칭 변경,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 명칭 :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 명칭 :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 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 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웰스중소형 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모자형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생 략>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 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 ~ 14. <생 략> ② ~ ⑤ <생 략>	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 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 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8조의2제4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중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다수 제외한 중·소형 주식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주식"이라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 3 조제 4 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2. 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삭 제>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삭 제>
5.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삭 제>
6. 금리스왑거래	<삭 제>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수익증권 등"이라 한다)	<삭 제>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삭 제>
9. 환매조건부채권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10.증권의 차입	<삭 제>
11.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삭 제>
12.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삭 제>
13.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삭 제>
14.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신 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

	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이하로 한다. 7.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2. 제 17 조제 2 항 각 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할 수 있다.	<삭 제>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 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	

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 제>
6.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삭 제>
7.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 제>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 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5 호부터 제 10 호까지 및 제 19 조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 19 조제 6 호에 따른 한도를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삭 제>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 19 조제 2 호 본문 및 제 4 호, 제 5 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 <생 략>	제25조의3(수익증권의 전환) <현행 제25조의2와 같음>
<신 설>	제 26 조의 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 ③ <생 략>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생 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한다. ③ <생 략>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생 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신 설> ⑩ <생 략>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 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 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 ③ <생 략>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통지된 날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 월 이내에 판매 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 45 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 ④ <생 략> ④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 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 45 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 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2. <생 략>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⑨ ~ ⑩ <생 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 아니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Class C-P2, Class C-P2e, Class 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이 신탁계약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설명서]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비교지수, 펀드명칭, 운용역 변경,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명칭 변경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요약정보	- - 비교지수 : MKF Wealth 중소형지수 100% - - 박주호(책임운용전문인력)	- 모자형 구조로 변경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 모투자신탁 추가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김상우(책임운용전문인력)/ 박정엽(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표시	-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2020.05.12 - 펀드명칭 변경(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변경[MKF Wealth 중소형지수 100%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주호 → 김상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박정엽)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변경전 - 박주호(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후 - 김상우(책임운용전문인력) - 박정엽(부책임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	모자형 구조 -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기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모자형 구조로 변경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모자형 구조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나. 수익구조	- - 비교지수 : MKF Wealth 중소형지수 100% -	- 모자형 구조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자형 구조로 변경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모자형 구조로 변경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 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 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신 설>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 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 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

		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 서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 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 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 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 으로 ….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명칭 변경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유리웰스힘찬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 - 비교지수 : MKF Wealth 중소형지수 100% - - 박주호(책임운용전문인력)	- 모자형 구조로 변경 - 비교지수 : (KOSPI 지수 × 95%) + (CD 91일물 × 5%) - 모투자신탁 추가(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김상우(책임운용전문인력)/ 박정엽(부책임운용전문인력)

<끝>.